

직제규정

제정 1996. 11. 1.

제83차 개정 2025. 3. 1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학원 정관 및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본교의 기본 행정 조직을 정하고 체계 있는 교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사무분장규정에 의한다.
(개정 2022.4.20.)

제2장 총장, 부총장, 총장 직속 기구 [장 명칭 변경 2020.1.22.]

제3조(총장)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.

제4조(부총장) ①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통할한다. (개정 2021.11.22.)

1. 교육연구부총장 :

- 가. 교무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
- 나. 예산, 감사,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
- 다. 교직원 인사, 취업, 학생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
- 라. 학술정보원·실습목장·실습농장·미디어센터·보건소·심리상담인권센터·공학교육센터에 관한 업무
- 마. 기타 교무, 학사, 행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

(개정 2022.2.18., 2025.3.14.)

2. 대외협력부총장 :

- 가.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모금, 국제교류 등에 관한 업무
- 나. 한방병원·산학협력단·평생교육원·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·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·탄소중립지원센터에 관한 업무
- 다. 기타 대외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장이 정하는 업무

(개정 2020.5.13., 2022.2.18., 2025.3.14.)

3. (삭제 2025.3.14.)

4. (삭제 2025.3.14.)

5. (삭제 2025.3.14.)

② 총장의 유고 시에는 **교육연구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**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22. 2.18., 2025.3.14.)

[전부개정 2019.2.27., 2020.1.22., 2020.3.18.]

제5조(비서실) 총장에 관한 비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비서실을 두며, 실장은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5조의2 삭제 (2020.5.13.)

제5조의3(학생군사교육단) ① 본교에 육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.

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2.24.]

제3장 보직 및 임기

제6조(보직 및 임기) ① 행정부서, 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단, 부총장의 임면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43조 제3항에 따른다.

② 행정부서의 원장, 실장, 센터장, 단장, 부장, 대학의 학과장, 학부장, 대학원의 부원장 및 주임교수는 총장이 임면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③ 부속기관, 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이 임면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단, 부속기관 중 한방병원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 (개정 2019.7.26., 2022.4.20.)

④ 사무직 팀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4장 대학, 학부(과) 및 대학원 [장 명칭 변경 2020.1.22]

제7조(단과대학)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, 학칙으로 정하는 유관 대학장 또는 학부(과)장 등을 겸직할 수 있다.

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지원팀을 두되,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 교학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③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
④ 한의과대학에는 한의학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해 한의학교육실을 둔다. 단, 한의학교육

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21. 6. 23.)

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7조의2(FIND칼리지) ① 교양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FIND칼리지를 둔다.

② FIND칼리지에 학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.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FIND칼리지에 교양교육센터, FIND-MYWAY센터, 기초 교양센터를 둔다. (개정 2025.3.14.)

[본조신설 2022.4.20]

제8조(학부 및 학과) ① 각 대학 및 대학원에는 학칙에 규정된 학부 및 학과를 둔다.

② 각 학부 및 학과에는 학부(과)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두며, 유관 대학장 또는 학부(과)장 등을 겸직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를 둔다.

④ FIND칼리지에는 비모집단위로서 FIND칼리지학부를 둔다. (신설 2022.8.23.)

[전부개정 2019.2.27., 2020.1.22.] [조명 변경 2020.1.22.]

제9조(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 ①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원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하고, 유관 대학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지원팀을 두며,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하고,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③ 대학원장은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
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5장 행정조직

제10조(대학본부) ① 총장이 통할하는 대학본부에 교무연구처, 기획처, 학생취업지원처, 대외협력처, 국제교류처, 입학처, 행정지원처, 미래교육혁신원을 두고,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, 실, 센터, 단, 부, 팀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21.11.21., 2022.4.20., 2024.1.31.)

② 제1항의 행정부서 각 처·원에는 처·원장을 두고, 각 처·원에 관한 임명사항은 제11조에서 제16조의2에 따른다. (개정 2021.11.21., 2022.4.20.)

③ 제1항의 원장, 실장, 센터장, 단장,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임명하고,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11조(교무연구처) ① 교무연구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22.4.20.)

② 교무연구처는 학교의 교무 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2.4.20.)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무연구처에 교무연구팀, 학사지원팀을 둔다. (개정 2020.7.30., 2022.4.20.)

[조명 변경 2019.2.27.] 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12조(기획처) ① 기획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22.4.20)

② 기획처는 학교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, 예산편성, 평가, 통계 및 성과관리, 감사 및 법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0.5.13., 2022.4.20.)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기획예산팀, 평가팀, 감사팀, IR센터를 둔다. (개정 2020.5.13., 2022.4.20., 2024.1.18.)

[조명 변경 2019.2.27.] 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13조(학생취업지원처) ①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22.4.20.)

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생지도, 학생서비스, 취업진로, 창업, 현장실습, 사회봉사, 장애학생 지원, 체육부, 숙박 및 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0.7.30., 2022.4.20., 2023.2.24.)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취업지원처에 학생지원팀, 취업진로지원팀, 창업지원팀, 현장실습지원센터, 사회봉사단, 장애학생지원센터, 체육부, 생활관을 둔다. (개정 2020.7.30., 2021.11.22., 2022.4.20., 2023.2.24.)

④ 삭제 (2022.4.20.)

[조명 변경 2019.2.27] 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14조(대외협력처) ① 대외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② 대외협력처는 대외협력, 발전기금, 대내외 홍보,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2.4.20., 2023.2.24., 2024.1.31.)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, 홍보팀을 둔다. (개정 2019.6.5., 2022.4.20., 2023.2.24., 2024.1.31.)

④ 삭제 (2022.4.20.)

[조 신설 2019.2.27.]

제14조의2(국제교류처) ① 국제교류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② 국제교류처는 국제교류, 외국인 유학생 유치, 한국어 연수과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처에 국제교류팀, 국제교육원을 둔다.

[본조신설 2024.1.31.]

제15조(입학처) ①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22.4.20.)

② 입학처는 입학, 입시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2.4.20., 2023.2.24.)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입학팀, 입학지원팀을 둔다. (개정 2022.4.20., 2023.2.24.)

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16조(행정지원처) ① 행정지원처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22.4.20.)

② 행정지원처는 학교의 행정지원, 회계, 구매관재, 학교시설 및 영선, 실험실습기자재의 종합관리 및 연구실 안전관리, 예비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2.4.20., 2023.2.24.)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처에 행정지원팀, 회계팀, 시설팀, 예비군연대를 둔다. (개정 2022.4.20.)

[조명 변경 2019.2.27.] [전부개정 2019.2.27.]

제16조의2(미래교육혁신원) ① 미래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22.4.20.)

② 미래교육혁신원은 교수와 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교수·학습을 지원하고, 교육의 질 및 성과관리,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2022.4.20.)

③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팀, 교수학습개발센터, 교육성과관리센터, 원격교육개발센터를 둔다. (개정 2022.4.20.)

④ 제6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연구전임교원을 미래교육혁신원 소속 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 (신설 2022.9.1.)

[본조 신설 2021.11.22.]

제6장 부속기관·부설연구소·위원회 [장명개정 2022.4.20.]

제17조(부속기관)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속기관을 둔다. (개정 2024.1.18.)

1. 한방병원 : 한방병원의 편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2. 학술정보원

가. 도서 및 연구자료의 수집·관리, 학술정보의 열람 및 대출, 전산기기를 이용한 학내 구성원의 교육 및 실습, 학사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업무, 교내 정보화 업무를관장한다.

나.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술지원팀과 전산정보팀을 두며, 각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3. 산학협력단 :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·기술을 개발·보급·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

4. 실습목장 : 동물자원 계열 학과의 실습교육 및 연구

5. 실습농장 : 식물·동물에 대한 실습 및 연구실험

6. 미디어센터 : 본교 언론기관으로 정규뉴스, 라디오, 웹진 편집, 제작 등

7. 삭제 (2023.2.24.)

8. 보건소 :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및 진료

9. 심리상담·인권센터 (개정 2023.2.24.)

가. 학생상담지도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처리 업무, 구성원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업무를 관장한다.

나.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팀과 인권팀을 두며, 각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10. 제5조의3으로 이동 (2023.2.24.)

11. 공학교육센터 : 공학교육인증 및 공학교육혁신

12. 평생교육원

가.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에게 평생교육,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양과 직업능력개발 및 사회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관장한다.

나.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팀과 HRD직업능력개발팀을 두며, 각 팀장은 6급 이상으로 임명한다.

13. (삭제 2025.3.14.)

14. 발달장애인통합지원센터 :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

15. (삭제 2025.3.14.)

16.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: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, 건전한 여가, 문화 활동 및 일상생활의 자립·자활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(신설 2022.8.23.)

17. 탄소중립지원센터 : 탄소중립, 녹색성장,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(신설 2023.9.18.)

[전문개정 2022.4.20.]

제18조(부설연구소) ① 본교에 학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교내·외 연구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② 부설연구소 직제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(원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[전부개정 2019.2.27.]

[전문개정 2022.4.20.]

제7장 삭제 (2022.4.20.)

제19조(위원회) ① 본교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.

[전부개정 2019.2.27.]

[전문개정 2022.4.20.]

제20조 삭제 (2022.4.20.)

제21조 삭제 (2022.4.20.)

제21조의2 삭제 (2022.4.20.)

제21조의3 삭제 (2022.4.20.)

제21조의4 삭제 (2022.4.20.)

제22조 삭제 (2022.4.20.)

제23조 삭제 (2022.4.20.)

제24조 삭제 (2022.4.20.)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평가관리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리실은 제13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'99학년도 대학평가 종료시까지 유지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는 2001년 6월 5일 학칙시행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288, 2004.4.14)

이 규정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397, 2005.4.19)

이 규정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707, 2005.6.28)

이 규정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938, 2005.9.6)

이 규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84, 2005.10.18)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365, 2005.12.12)

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412, 2005.12.26)

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63, 2006.11.13)

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529, 2007.5.14)

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279, 2007.11.27)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814, 2008.7.16)

이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897, 2008.8.14)

이 규정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43, 2008.9.30)

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288, 2008.11.19)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72, 2009.2.18)

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455, 2009.4.9)

이 규정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764, 2009.6.22)

이 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88, 2009.2.10)

이 규정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56, 2010.4.23)

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701, 2010.6.8)

이 규정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890, 2010.7.27)

이 규정은 201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714, 2011.6.2)

이 규정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272, 2011.11.7)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8, 2012.1.16)

이 규정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52, 2012.3.14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44, 2014.4.3)

이 규정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27, 2014.07.30)

이 규정은 2014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795, 2014.10.22)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873, 2014.11.10)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45, 2015.01.15)

이 규정은 2015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90, 2015.01.29)

이 규정은 2015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50, 2015.02.24)

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56, 2015.06.08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부총장에 관한 경과조치) 신 직제규정에 따른 부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부총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86, 2015.06.19)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0, 2016.01.11)

이 규정은 2016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09, 2016.02.15)

이 규정은 2016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25, 2016.08.10)

이 규정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86, 2016.09.05)

이 규정은 2016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67, 2017.04.20)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7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거 시행된 행정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73, 2017.09.20)

이 규정은 2017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00, 2017.12.05)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61, 2017.12.29)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26, 2018.04.26)

이 규정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363, 2018.07.12)

이 규정은 2018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54, 2018.08.30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농업과학교육원규정 및 숲해설가 양성교육원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19, 2019.02.27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보직교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96, 2019.06.0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84, 2019.07.26)

이 규정은 2019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17, 2019.10.15)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51, 2019.11.06)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4, 2020.01.22)

이 규정은 2020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79, 2020.03.18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5, 2020.05.13)

이 규정은 2020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27, 2020.06.26)

이 규정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83, 2020.07.30)

이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61, 2021. 6. 23.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613, 2021. 11. 22.)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09, 2022. 02. 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년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대학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교육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②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제5항 중 “교육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③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단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사회협력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④ 교육혁신특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“교육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교육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⑥ 발전기금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사회협력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⑦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중 “사회협력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⑧ 사회협력 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사회협력부총장” 을 “부총장” 으로 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 04. 2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학칙 시행세칙, 사무분장규정, 위임전결규정, 교원인사규정, 교직원 인사규정 운영내규, 예산·회계규정 등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.

1. “교육연구처” 를 “교무연구처” 로 하고, “교육연구처장” 을 “교무연구처장” 으로 한다.
2. “기획평가처” 를 “기획처” 로 하고, “기획평가처장” 을 “기획처장” 으로, “평가성과 관리팀” 을 “평가팀” 으로 한다.
3. “학생행복처” 를 “학생취업지원처” 로 하고, “학생행복처장” 을 “학생취업지원처장” 으로, “학생행복팀” 을 “학생지원팀” 으로, “창업지원단” 을 “창업지원팀” 으로, “상지대학교사회봉사단” 을 “사회봉사단” 으로, “학생행복상담센터” 를 “학생심리상담센터” 로 한다.
4. “국제어학원 국제교류팀” 을 “국제교육원” 으로 한다.
5. “입학홍보처” 를 “입학처” 로 하고, “입학홍보처장” 을 “입학처장” 으로 한다.
6. “인재개발원” 을 “미래교육혁신원” 으로 하고, “인재개발원장” 을 “미래교육혁신원장” 으로 한다.
7. “총무팀” 을 “행정지원팀” 으로 한다.
8. “상지미디어센터” 를 “미디어센터” 로 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65, 2022. 06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공포·시행과 동시에 HRD직업능력혁신원 규정, 교육연수원 규정,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단 규정, 인재개발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120, 2022. 08. 23.)

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188, 2022. 09. 01.)

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406, 2023. 2. 24.)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959, 2023. 09. 1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보직교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03, 2024. 01. 18.)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00, 2024. 01. 31.)

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643, 2025. 03. 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대학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및 제4항 중 “부총장” 을 “교육연구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②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제5항 중 “부총장” 을 “교육연구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③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부총장” 을 “교육연구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④ 발전기금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부총장” 을 “대외협력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⑤ 부속한방병원 발전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중 “부총장” 을 “대외협력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⑥ 사회협력 추진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부총장” 을 “대외협력부총장” 으로 한다.

⑦ 이외 규정은 부총장 통할 처에 따라 개정한다.